

시의원(김용석 의원님)서면답변서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서면질문서(2017.11.21.)

□ 요구내용

- (1) 토목처-5600(2017.11.07.) [공사 일시 중지 및 업무 협의 요청] 이후 도봉구의 신고 수리 현황 및 사전협의 내역
-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고가하부 불법굴착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 (3)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현장방문 여부(2017년 11월 17일 5분발언 관련)

2017. 11. 29.(수)



김 용 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서면질문서(2017.11.21.)

□ 요구내용

- (1) 토목처-5600(2017.11.07.) [공사 일시 중지 및 업무 협의 요청] 이후 도봉구의 신고 수리 현황 및 사전협의 내역
-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고가하부 불법굴착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 (3)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현장방문 여부(2017년 11월 17일 5분발언 관련)

1. 토목처-5600(2017.11.07.) [공사 일시 중지 및 업무 협의 요청] 이후 도봉구의 신고 수리 현황 및 사전협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일시	문서번호 (가로관리과)	주요 내용	비고
1	2017.11.07.	15995	창동역 환경개선 사업 관련 개요 및 세부 추진 계획	1차
2	2017.11.14.	16372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및 해당 사업 관련 도면	2차
3	2017.11.16.	16557	창동역 2번 출구 앞 3필지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부지임	3차
4	2017.11.21.	16772	창동역 교각주변 상·하수도 공사 도면 및 거리가게 배치도면 등	4차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고가하부 불법굴착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일시	문서번호 (토목처)	주요 내용	비고
1	2017.11.07.	5600	「창동역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은 철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부지 상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철도안전법에 의거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이나 우리 공사에 사전 신고 되지 않은 바, 공사 일시 중지 및 협의 절차 진행 요청	

3.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현장방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해당 현장(창동 고가)을 2회 이상 방문, 고가 하부 불법점거물 철거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진행 사항을 관련부서(토목처)로부터 수시로 보고받고 있음
- 해당 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음

	소 속	직 위	성 명
작성 자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처 장	김 만 화
	☎ 6311-9888	담 당	박 재 현
	작 성 일	2017. 11. 29.	

□ 창동역 고가하부 불법노점상 관련

1. 창동역 고가하부 불법노점상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도시교통본부의 도봉구에 대한 지도 감독 현황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고가하부 불법굴착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의 도봉구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3. 도시교통본부장 현장방문 여부(2017년 11월 17일 5분 발언 관련)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고가하부 불법노점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창동역 고가하부 불법노점상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도시교통본부의 도봉구에 대한 지도 감독 현황
 - 창동역 고가하부 불법노점상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가 통보되어 고가 시설물 관리 및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시설물 및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고가하부 불법굴착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의 도봉구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대상으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신고 처리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3. 도시교통본부장 현장방문 여부(2017년 11월 17일 5분 발언 관련)
 - 현재 창동역 고가하부 불법노점상이 철거된 상태이며, 철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